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18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18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1가소5002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 종결2022. 4. 8.

판결 선고2022. 5. 13.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1가소5002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20. 3. 4. 06:25경 경남 고성군 C 근처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편도 2차로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고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2020. 12. 21.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4,7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미등 및 비상 점멸등을 켜 채 도로에 선진입하여 기회전 중이었음에도, 피고차량이 과도한 썬팅으로 시야확보에 제한이 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과실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4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뜨기 직전이라 주위가 캄캄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도로는 가로등이 전혀 없는 도로였는데, 원고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어떠한 경고나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 바깥 쪽에서 2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후진하여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였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을 한 점, ② 원고차량은 차량의 앞부분을 이용하여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후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고차량의 과실이 중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각에 비추어봤을 때 전방 시야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도로 외에서 도로로 후진하여 진입하는 원고차량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차량의 전면 유리에 시공된 썬팅으로 인하여 시야확보에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90% 대 1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으로 22,261,500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24,735,000원 × 원고차량 과실비율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4,73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473,500원(= 24,735,000원 - 22,261,500원)을 초과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황지현

판사박승휘